◈며느리 권씨 열전 27-2

향산 이만도의 부인 , 지사 이중업의 어머니, 김락의 시어머니

(숙부인 권씨, 복야공파 32世, 권승하權承夏의 딸)

권씨 부인의 계보

안동 권씨 복야공파는 10세 권수홍을 시조로 하여 관직 가문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치며 거의 모든 세대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여 명문 관료 가문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이 가문은 관료직과 함께 학문적 전통도 견고하게 이어왔다. 15세 권인이 문과에 급제한 것을 비롯하여, 학행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과 저술을 남긴 인물이 등장하여 사림 가문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20세 권벌(충재)이 기묘사화와 관련된 점에서 이 가문이 조선 중기 이후 사림파 계열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문의 정치적 성향과 학문적 입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가문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인물이 60세 이상의 수명을 누렸고, 500년 이상 세대를 이어오며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였다.

근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31세손 권승하에 이르러서는 고위 관직 기록이 보이지 않아 가문의 중앙 정치적 지위가 전보다 약화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러나 생원의 신분으로 지방 사족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문적 배경을 가진 안동 권씨 부인이 향산 이만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두 가문의 결합은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였으며, 전통 유학 가문의 교육과 가치관은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世	성명	생년-생몰	향년	행적 및 주요 사항
10世	권수홍(權守洪)			복야(伏射) 역임, **복야공파**시조
11世	권자여(權子輿)			금자광록대부
12世	권윤평(權允平)			추밀원부사
13世	권구(權具)			대호군
14世	권세진(權世珍)			판전객시사
15世	권인(權靷)			문과 급제, 한성부윤, 판서 역임
16世	권후(權厚)	? - 1418		중랑장 역임
17世	권계경(權啓經)			선교랑 역임
18世	권곤(權琨)	1427-1502	76세	호군 역임, 부호, 증 자헌대부
19世	권사빈(權士彬)	1449-1535	87세	생원, 대과 실패 후 귀향
20世	권벌(權橃)	1478 -?		충재,충정공
21世	권동보(權東輔)	1518-1592	75세	청암공, 직장 역임
22世	권래(權來)	1562-1617	56세	군자감정,石泉逸稿
23世	권상충(權尙忠)	1593-1643	51세	학행(學行)으로 명성
24世	권홍(權鴻)	1626-1699	74세	
25世	권두수(權斗壽)	1652-1714	63세	
26世	권시(權蓍)	1668-1747	80세	판서 역임
27世	권정국(權正國)	1699-1784	86세	
28世	권사겸(權思兼)	1720-1793	74세	
29世	권백도(權百度)	1753-1822	70세	
30世	권재륜(權載綸)	1785-1844	60세	
31世	권승하(權承夏)	1807-1890	84세	생원/곽종석비문
32世	**권씨부인**	1841-1886	45세	**향산 이만도 부인**

친정 아버지 권승하의 비문을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 면암 곽종석이 썼다는 것은 대단하다.

숙부인 안동 권씨의 삶

학문 명문가의 딸에서 의병 가문의 어머니까지, 조용히 역사를 지탱한 46년은 권씨 부인은 대체로 며느리 김락에 비해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한다. 그 뒤 남편의 의병활동, 한일병합 남편 자결 등의 험한 꼴은 당하지 않고 그전에 별세했으나, 친정 부친(권승하)은 생존(80세)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비극이었다.

생애, 학문과 의리가 교차한 삶

숙부인 안동 권씨(淑夫人 安東 權氏, 1841년 추정~1886년)는 19세기 조선 후기, 학문적 명문가에서 태어나 의병 지도자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로 살다 간 여성이다. 그녀의 삶은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 여성의 행로를 따르면서도, 조선 말기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는 학문과 의병, 독립 정신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1841년(추정) 안동 권씨 명문가에서 진사 권승하(權承夏)의 딸로 태어났다. 학문적 환경이 농후한 봉화 유곡(酉谷)에서 성장하며, 당대 저명한 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1859년, 18세의 나이로 안동 이씨 가문의 이만도(李晩燾, 1842~1910)와 혼인한다. 이 결혼은 두 가문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 학문적 계보의 계승과 확장을 의미했다. 흥미롭게도 남편 이만도는 혼인 이후인 1860년부터 장인 권승하와 처 숙부 권연하 문하(權璉夏 1818-1862)에서 본격적으로 수학하며 그의 학문적 토대를 다졌다.

숙부인 권씨(1841~1886) 음 12월 19일)는 2남1녀(이중업李中業, 1863~1921, 이중집李仲執, 1880~1936, 이호李鎬 전주 유원린의 처)를 낳았고 이중업의 처 김락(金洛, 1862~1929)이 시집 온지 2년만에 사망하였다. 부인은 1866년(26세)에 남편 이만도가 장원급제하니 그 기쁨은 대단하였을 것이다. 남편이 중앙의 관직(부교리, 우통례, 병조정랑, 시강)을 나갈 때는 평온했을 것이나, 그러나 빈한한 직안이었고 남편의 과거 시험 뒷바라지 한 것등 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10년뒤 최익현의 대원군 비난에 이의 제기로 삭탈당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 복직 1882년 공조참의가 되고 동부승지(지금 대통령 수석비서관 급)를 제수하나 거부하고 백동(柏洞書堂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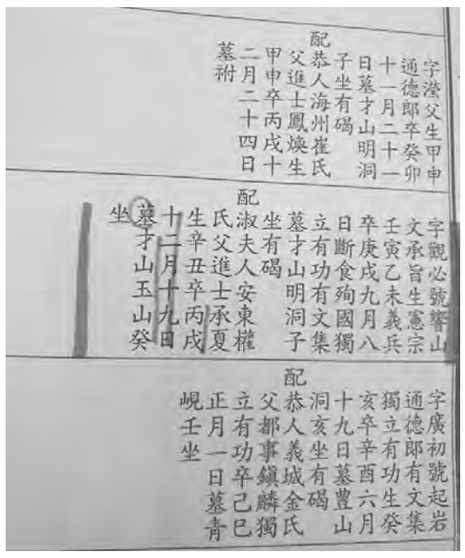

이만도 진성이씨 족보, 출가후 행적은 출가 집안이 잘 알기에 족보의 분석도 이 교차점검에서 그 진위와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다. 사진 권석훈 제공

토계)에 칩거 할 때 힘들었을 것이다. 그 뒤 1886년 음력 12월 19일, 향년 46세로 별세할 당시 남편 이만도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전념하던 시기였다.

큰 아들 중업은 17세, 둘째 이중집은 6세(요절), 딸 이호는 25세쯤 되었을 것이다.

세 가지 정체성: 그림자 속의 지지자이자 매개자

그녀의 삶은 세 가지 정체성이 교차한다.

첫째, '학문 명문가의 딸'이다. 친정 안동 권씨 가문은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학문적 가문이었다. 아버지 권승하와 숙부 권연하는 남편 이만도의 정신적 스승이자 지주 역할을 했으며, 이만도의 학문 세계 형성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했다.

둘째, '의병 지도자의 아내'이다. 남편 이만도는 갑오경장(1894) 이후 선성의진 의병장으로 활약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에는 '을사오적' 처단 상소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했으며, 1907년에는 일본군이 그 종택에 방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부인 권씨는 이러한 남편의 투쟁 기간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초기 학문적 성장과 관직 생활 시절을 조용히 뒷받침한 내조자 역할을 했다.

셋째, '독립운동가 가문의 어머니'이다. 시집인 안동 이씨 가문은 이만도를 필두로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녀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이어 독립 정신을 계승했다. 그녀는 혈육을 통해 항일 의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모체 역할을 했다.

친정과 시집: 의병 활동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녀의 혼인은 두 가문의 연결을 넘어 지역 사족(士族)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친정인 봉화 권씨 가문은 학문적 명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봉화 유곡 일대는 후일 '유곡 의진(酉谷義陣)' 등 항일 의병 활동의 중요한 근거지로 발전했다. 이는 학문 공동체가 의병 활동의 인적, 물적 토대로 전환될 수 있었던 지역적 배경을 보여준다.

배 숙부인 안동권씨 부계좌, 조선국세신승정원동부승지진성이공만도지묘

시집인 진성 이씨 가문은 관료 가문이자, 국가적 위기 시기에는 의병 가문으로 변모했다. 이만도는 2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대의 부름에 따라 의병장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또한 백동서당을 건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는 등 학문 가문의 면모도 지녔다.

기록의 간극을 채우는 의미

공식 기록에는 '이만도의 부인'으로만 간략히 언급되는 숙부인 안동 권씨. 그러나 그녀의 생애를 복원해보면 조선 후기 여성사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첫째, 학문적 전승의 매개자였다. 그녀의 혼인은 남편 이만도가 학문 명문가의 지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둘째, 의병 운동의 간접적 지원자였다.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 학문과 관직, 그리고 이후의 투쟁의 길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독립운동 정신의 세대 간 계승자였다. 두 아들을 독립운동가 가문의 후예로 키워냈다.

특히 그녀가 1886년 별세한 시점은 이만도가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준비하기 직전인 점에서, 그녀의 죽음이 이만도의 인생 전환과 항일 투쟁에 대한 결의에 미친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숙부인 안동 권씨의 삶은 비록 간결한 기록 뒤에 가려져 있지만, 조선 말기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사대부 가문 여성의 전형적이면서도 특별한 궤적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학문과 의리, 그리고 저항 정신이 교차하는 역사의 매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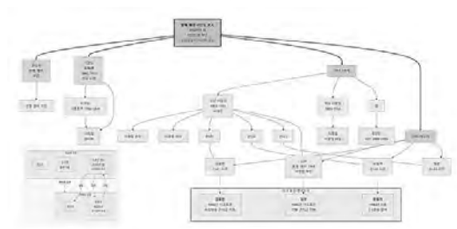

권씨부인을 중심으로 작성한 이만도 가문의 도표, 추후 'AI 족보 표현 방식'의 하나이고 앞으로 '나(我)'를 중심으로 한류문화원(대표 권오철)이 연구중인 형식이다. 사진 글록3

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그녀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거나 희미한 기록의 여성들을 조명하는 작업은 역사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역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녀의 46년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당대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증여세 절세 전략 ②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의 확대 일환으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 또는 타익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애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한 재산을 증여하는데 따른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7. 증여재산공제와 쪼개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아버지-할아버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 아들-손자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다. 만일 부부가 50년을 같이 산다면 10년 단위로 6억원x5 즉, 30억원까지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자 수를 늘리면 절세가 된다. 이를 '수증자 쪼갠다'라고 해서 쪼개기 증여라고도 한다.

8.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증여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두 번 하는 것 보다 절세가 되나, 아들을 건너 뛰어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를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하는데, 할증세액은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며,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과세가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가 인기가 좋다. 더욱이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절세전략으로 많이 활용한다.

9.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

요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 방식을 택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3억원 한도)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의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례-특수관계자간 증여와 저가 양수도 차이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① 100% 증여 방식을 택하는 경우와 ② 2억원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부담이 어디가 유리한가?

증여세계산	1안(증여)	2안(저가양수도)
증여재산가액	500,000,000	15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450,000,000	100,000,000
(x)세율		
=산출세액	80,000,000	10,000,000
(-)신고세액공제	2,400,000	300,000
=신고납부세액	77,600,000	9,700,000

상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 방식을 활용하였을 때는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관련 주요 예규 해설〉

질문1) 증여세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세 부담없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 한도?

답변)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핵심은 **'적정 이자율'과 '이자 차액 1,000만원'** 입니다.

☞ **적정 이자율:**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다.

☞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1,000만원 기준을 역산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억 1,700만원 * 4.6% = 약 998만 2천원)

주의할 사항: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여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출 원금, 이자율 (무이자일 경우도 명시해야함), 변제 기한,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2.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이 명확하게 남아있어야 하며,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3. **차용 기간 및 금액의 현실성:** 대출 기간이 너무 길거나 자녀의 소득에 비해 대출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사회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부모의 이자소득:**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실질적으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즉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법상 기준이며,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계약 내용 이행이 필수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5. 우리의 할아버지들

천손(天孫)인 우리 한민족(韓民族)만이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것은 효(孝)와 수련문화(修練文化)이다. 우리의 효(孝)문화는 타민족들의 부모사랑, 그것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저들의 부모사랑은 내 것 사랑으로 자신의 이기심의 일환(一環)이지만, 우리의 효 사상은 하나님(하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부조(父祖), 부모님과 조상은 하늘에서 왔으니 곧 하늘(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祭祀)는 조상과 하늘(하나님)께 예(禮)를 정성을 다하여 표(表)하는 천손들만 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의 민족정신의 발로(發露)이다.

우리의 효 사상이 대(代)를 이어서 지켜지는 한 인류평화는 지켜질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던가? 그 줄기와 가지가 자신의 뿌리를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찾는 일이다. 그 뿌리를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라. 그곳에는 태초의 하나뿐인 하나님, 한 분뿐이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가!

차제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조상(祖上)의 개념을 살펴보자. 한민족(韓民族)그 심원(深遠)한 뿌리를 거슬러서 올라 가보자.

첫째로, 한국의 건국시조(建國始祖)이신 한인(桓因, B.C. 7197)

천제(天帝)께서 한단고기(桓壇古記, 三星編)에서 말씀하시기를 파내류(波奈留, 파미르고원)산 아래에 한인(桓因)씨의 나라가 있었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여 리인데 이것을 모두 한국(桓國)이라 했다.

"옛날 한국(桓國)이 있었나니 백성들은 부유하고, 그 수도 많았다. 처음 한인(因)께서 천산(天山. 현 천산산맥, 天山山脈, 중국어:티엔샨, 티엔은 하늘 천자의 중국발음)에 올라 도(道)를 얻고 오래 살았으니 몸에는 병도 없었다. 하늘을 대신하여 널리 교화(教化)하시니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싸울 일도 없었고 누구나 힘껏 일하여 굶주림과 추위가 없게 하였다"(위는 한단고기, 삼성기 전, 하의 인용문이다)

둘째로, 한웅천황(桓雄天皇, B.C. 3897, 배달국(倍達國) 건국시조)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천부인(天符印)을 가지고 오사 오사(五事)를 주관하였으며, 세상과 하늘의 이치에 맞도록 교화(教化, 在世理化)하여 사람을 널리 이롭게(弘益人間)하셨다. 도읍을 신시(神市)에 세우고, 나라이름을 배달국(倍達國)이라 하였다. 한웅(桓雄)이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온 곳을 신시(神市)라고 하였으며 이 분을 황웅천황(桓雄天皇)이라 한다.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부리시어 곡식과 임금의 명(命)과 형벌과 질병과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세상을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교화하여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환웅천황이 처음 하늘을 열어 백성을 교화할 때, 천부경(天符經)이나 삼일신고(三一神誥)를 가르쳐 백성을 크게 깨우쳤다. 구환(九桓, 아홉 사람의 환인)이 모두 삼신(三神)을 한 뿌리의 조상을 삼았으며 소도(蘇塗)를 관리하고, 관경(官境)을 지키고, 무리와 의논하여 화백(和白)을 이루고 지혜와 생업을 함께 힘쓰며 살았다.(위는 한단고기, 삼성기 전 하의 인용문이다)

셋째로, 태호복희(太昊伏羲, B.C. 3511, 5대(代) 태우(太虞)의 환웅의 막내아들)

배달국(倍達國) 5대 태우의 환웅은 열두 아들을 두었다. 맏아들이 6대 태우인 다의발(多儀發) 한웅이며, 막내아들이 태호(太昊)이다. 이 태호(太昊)를 복희(伏羲)라고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